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 
2022. 12. 8.(목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

(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#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설치근거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 
광고물 수준향상

불법 옥외광고물등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 
생활환경 조성

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기금적립 및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광고물 정비, 개선사업 추진

## 5.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

### 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㉠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	1,152,212	159,000	290,560	△131,560	1,020,652	

### ○ 자금 운용 계획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159,000	159,000	0
증지수입	50,000	50,000	0
공공예금 이자	19,000	19,000	0
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	30,000	30,000	0
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	60,000	60,000	0

#### 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290,560	144,626	145,934
심의위원회 수당	560	80,560	△ 80,000
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	290,000	33,000	257,000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임.

### ○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#### - 수입내역

증지수입 5,000만원

공공예금 이자수입 1,900만원

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9,000만원

총 1억 5,900만원이며,

#### - 지출내역

회의 참석 수당 56만원

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 2억 9,000만원

총 2억 9,056만원입니다.

○ 본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구성되며 2023년 간판특화거리사업은 금천구청길의 기존간판을 일제정비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예산 편성 등 운용계획은 관계 법령 등에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# 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10.] [법률 제1737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6.> [전문개정 2011.3.29.] [제목개정 2016.1.6.]

## 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29.>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7.12.29.>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<개정 2017.12.29.>
2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<개정 2013.8.9.>
3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<개정 2013.8.9.>
4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<개정 2013.8.9.>

5.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, 잡수입 등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<개정 2017.12.29.>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 <개정 2017.12.29.>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<개정 2017.12.29.>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17.12.29.>
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[종전 제4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6. 간판 디자인 및 제작·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[종전 제5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[종전 제6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
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